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11월 11일(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12월 12일(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교육국장 노재전)

가. 제안이유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에 의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정원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총수를 변경하고
-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 구성·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2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2,971명을 3,015명으로 44명을 증원하고
- 제2항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정원을 2,958명을 3,002명으로 44명을 증원하며

- 안 제3조의 한시정원은 9명을 25명으로 16명을 증원하며
- 부칙 2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준)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에 근거한 충청북도 교육청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된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의 설치운영 계획과 학교신설, 교육학사시스템관리, 충청북도 협력관 파견에 따른 정원 및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일반직 5명, 기능직 9명이며
 - 충주 금능초 : 기능직 4명
 - 청원 목령초 :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 청원 목령중 :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
-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설치에 따른 일반직 22명 증원
 - 각 지역교육청별 : 일반직 2명(6급 1명, 7급 1명)
- 교육학사시스템관리 전산 일반직 6명 증원
- 충북도청 협력관 파견에 따른 2명 증원임.
- 학교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 지역교육청의 현 혁신업무담당배치현황과 업무량,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한시정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
- 기존 NEIS시스템이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른 추가인력의 필요성
- 교육협력관의 파견의 필요성 및 주요추진업무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학교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지역교육청별 혁신팀 인력 및 교육학사시스템 관리를 위한 증원의 경우 현재의 업무량 고려 및 충북도청 협력관 파견의 경우는 정원의 증원이 없이 파견한다는 당초 계획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함

나. 주요내용

-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3,015명”을 “2,985명”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3,002명”을 “2,972명”으로 하고
- 개정안 제3조 중 한시정원을 “25명”을 “3명”으로 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년 12월 12일

제안자 : 장준호 의원외

□ 제안이유

- 학교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지역교육청별 혁신팀 인력 및 교육학사시스템 관리를 위한 증원의 경우 현재의 업무량 고려 및 충북도청 협력관 파견의 경우는 정원의 증원이 없이 파견한다는 당초 계획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함

□ 주요내용

-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3,015명”을 “2,985명”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3,002명”을 “2,972명”으로 하고
- 개정안 제3조 중 한시정원을 “25명”을 “3명”으로 함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3,015명”을 “2,985명”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3,002명”을 “2,972명”으로 하고
- 개정안 제3조 중 한시정원을 “25명”을 “3명”으로 함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971명</u> 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 <u>2,958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p> <p>.....<u>3,015명</u>.....</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p>.....</p> <p>.....</p> <p><u>3,002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p> <p>.....</p> <p>.....<u>2,985명</u>.....</p> <p>.....</p> <p>1. (개정안과 같음)</p> <p>2.</p> <p>.....</p> <p>.....</p> <p><u>2,972명</u></p>
<p>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u>9명</u>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한시정원)</p> <p>.....</p> <p>.. <u>25명</u>.....</p> <p>.....</p>	<p>제3조(한시정원)</p> <p>.....</p> <p>.. <u>3명</u>.....</p> <p>.....</p>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2조중 “2,971명”을 “3,015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2,958명”을 “3,002명”으로 한다.

제3조중 “9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971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958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u>3,015명</u>.....</p> <p>1. (현행과 같음)</p> <p>2.....</p> <p><u>3,002명</u></p>
<p>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u>9명</u>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한시정원)<u>25명</u>.....</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